


청송군 의회에서 의결된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
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청 송 군 수 한 동 
2017년 12월 31일

청송군 조례 제 2038 호

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의)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성수기”란 1년 중 7월~10월을,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
제7조는 제1호에서 “감면”을 “면제”로,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서 “감면”을 “감경”으로 하며, 각 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사용료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는 경우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·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
 - 나.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(비영리목적에 한한다)
2. 사용료 일부(50%)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~3급의 장애인
 - 나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- 다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
 -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-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
 - 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 - 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 - 아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- 자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차.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중·고등 학생들이 숙박하는 경우
3. 사용료 일부(30%)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
- 가.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 - 나. 장기체류자의 경우
 - 다. 단체의 경우
 - 라.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4. 사용료 일부(20%)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~6급의 장애인

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(손해배상)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「민법」에 따른다.

별표 1,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시설사용료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	비수기	성수기
대문채	2인실	30,000	40,000
	4인실	50,000	60,000
일반	2인실	40,000	50,000
	3인실	50,000	70,000
	4인실	70,000	90,000
	5인실	90,000	120,000
	6~8인실	120,000	150,000
특실	2인실	70,000	90,000
	3인실	90,000	120,000
	4인실	100,000	150,000

※ 참고사항

1.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,000원 추가
2. 수용인원 2인 이상 초과 불가(2인실 초과 불가)
3. 객실 이외의 공간(마루, 화장실, 샤워실, 마당 등)은 모두 공용
4.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[별표 3]

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8조 관련)

해당시설물	내 용	반환기준(주말)		비 고
	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, 민예촌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	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		
민 예 촌	시설사용예정일 전 예약자가 취소할 경우	사 용 예 정 일 10 일 전 취소	선납금액 전액 반환	성수기
		사 용 예 정 일 7 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	
		사 용 예 정 일 5 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60 반환	
		사 용 예 정 일 3 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40 반환	
		사 용 예 정 일 1 일 전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(입실전)	선납금액 100분의 10 반환	비수기
		사 용 예 정 일 2 일 전 취소	선납금액 전액 반환	
		사 용 예 정 일 1 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	
		당일 취소(입실전)	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	

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·배상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성수기”란 1년 중 7월~10월을, “비수기”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</u></p>
<p>제7조(사용료 감면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용료 전액을 <u>감면</u>할 수 있는 경우</p> <p>가. 나.(생략)</p> <p>2. 사용료 일부(50%)를 <u>감면</u>할 수 있는 경우</p> <p>가. <u>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</u></p>	<p>제7조(사용료 감면)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사용료 전액을 <u>면제</u>할 수 있는 경우</p> <p>가. 나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사용료 일부(50%)를 <u>감경</u>할 수 있는 경우</p> <p>가. <u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~3급의 장애인</u></p> <p>나. <u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</u></p> <p>다. <u>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</u></p>

나. 청송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
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·
중·고등학생들이 단체 숙
박을 할 경우

3. 사용료 일부(30%)를 감면할
수 있는 경우

가.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
있는 자

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
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참전유공자

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
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

바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
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
사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특수임무유공자

아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
따른 수급자

자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
른 한부모가족

차. -----
----- 초·
중·고등학생들이 숙박하
는 경우

3. 사용료 일부(30%)를 감경할
수 있는 경우

가.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
있는 경우

나.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 체류하는 자

다. <신 설>

라. <신 설>

4.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(12월~3월)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사용료 감면)

제10조(손해배상) 관람자 및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나. 장기체류자의 경우

다. 단체의 경우

라.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 등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사용료 일부(20%)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4~6급의 장애인

제10조(손해배상) -----

--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「민법」에 따른다.

<현행> [별표 1]

시설사용료
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사용료	
대문채	2인실	30,000
	4인실	50,000
일반	2인실	40,000
	3인실	50,000
	4인실	70,000
	5인실	90,000
	6~8인실	120,000
특실	2인실	70,000
	3인실	90,000
	4인실	100,000

※ 참고사항

1.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,000원 추가
2. 수용인원 2인 이상 초과 불가(2인실 초과 불가)
3. 객실 이외의 공간(마루, 화장실, 샤워실, 마당 등)은 모두 공용

<개정> [별표 1]

시설사용료

(제6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비수기	성수기
대문채	2인실	40,000
	4인실	60,000
일반	2인실	50,000
	3인실	70,000
	4인실	90,000
	5인실	120,000
	6~8인실	150,000
특실	2인실	90,000
	3인실	120,000
	4인실	150,000

※ 참고사항

1. 객실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,000원 추가
2. 수용인원 2인 이상 초과 불가(2인실 초과 불가)
3. 객실 이외의 공간(마루, 화장실, 샤워실, 마당 등)은 모두 공용
4.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
<련행> [별표 3]

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8조 관련)

해당시설물	내용	반환기준	비고
민 예 존	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취제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, 민예존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예약일 이전 :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예약일 이후 : 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	
		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	선납금액 전액 반환
		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
		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
		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
	당 일 취 소	반환하지 않음	

<개경> [별표 3]

시설사용료 반환 기준(제8조 관련)

해당시설물	내용	반환기준(주말)	비고
민 예 존	예약 선납된 경우로서 취제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, 민예존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	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	
		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	선납금액 전액 반환
		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
		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60 반환
		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40 반환
		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(입실전)	선납금액 100분의 10 반환
		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	선납금액 전액 반환
		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	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
		당일 취소(입실전)	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

※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·배상